



NANCY BARGMANN
부서장

캘리포니아주 — 보건복지국

발달장애서비스부

1215 O Street, Sacramento, CA 95814
www.dds.ca.gov



GAVIN NEWSOM
주지사

2024년 2월 06일

수신: 리저널센터 사무장

제목: 소셜 레크리에이션, 캠핑 및 비의료적 치료 – 입법 의도 및 제공자 접근성

이 지침의 목적은 복지 및 공공시설법(W&I) [4688.22](#)절에 포함된 요건을 명확히 밝히고 리저널센터에 전문 레크리에이션, 미술, 무용, 음악(소셜 레크리에이션, 캠핑 및 비의료 요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셜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캠핑 서비스 및 비의료적 치료의 제공자 접근성 및 제공업체 계약 체결을 촉진하는 지침, 제공업체 계약 체결 촉진 및 참가자 중심 서비스 사용의 요건, 캘리포니아주 규정집(CCR) 제17조 [57210\(a\)\(19\)](#)절에 명시된 U&C(통상 및 관례) 요율 적용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W&I법 4688.22(c)절은 발달장애서비스부(이하 '부서')가 이 절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또는 그와 유사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배경 설명

부서는 [2023년 11월 3일](#)에 소셜 레크리에이션, 캠핑 및 비의료적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변경 사항에 관한 지침을 리저널센터에 제공했습니다. W&I법 4688.22(a)에 포함된 입법 취지는 리저널센터가 소셜 레크리에이션, 캠핑 및 비의학 치료와 관련된 기존 서비스 기회를 개인에게 소개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및 자금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의 가용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 체결을 가속화하는 데 있습니다.

W&I법 4512(b)절에는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이란 발달장애의 완화 또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개인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재활 또는 독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정상적인 삶의 성취 및 유지를 위한 전문 서비스 및 지원 또는 일반 서비스 및 지원의 특수한 조정을 의미합니다." W&I법 4688.22(a)절에 명시된 대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입법부의 의도를 고려할 때, 리저널센터는 W&I법 4512(b)절을 사용해 서비스 지원 자금을 전문적이거나 발달장애 완화를 위한 서비스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소셜 레크리에이션, 캠핑 및 비의학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은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 수립 절차를 기반으로 하고, 기획 팀은 W&I법 4646(a)절에 포함된 "리저널센터 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 수립, 서비스 및 지원 제공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개인과 가족의 필요와 선호를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입니다. 고객과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고, 고객의 선호와 선택을 반영하며, 공공자원의 비용효율적인 사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부의 추가 의도입니다."라는 입법 취지 문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1:1 소셜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자금 지원

W&I법 4688.22(a)(2)절에는 "따라서 소셜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캠핑 서비스 및 전문 레크리에이션, 미술, 무용 및 음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의학적 치료가 개인에게 널리 제공되어 사회화를 수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저널센터는 소셜 레크리에이션, 캠핑 및 비의료적 치료 자금 지원을 고려할 때 서비스 구매(POS) 정책에 레크리에이션과 사회화 요구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거나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1:1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사회화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화 기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저널센터는 개인 레슨과 같은 1:1 서비스 구매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부담금 또는 공동부담금 약정 요구 금지

W&I법 4688.22(b)(3)절에는 "2023년 7월 1일부로 리저널센터는 고객 또는 그 가족 구성원에게 (3) 소셜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캠핑 서비스 또는 전문 레크리에이션, 미술, 무용 및 음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의학적 치료를 받기 위해 비용 충당 목적의 본인부담금 또는 이와 유사한 공동부담금 약정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법령은 주간 보호 또는 임시 간병 등 서비스로 충족되는 요구 사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또는 공동부담금 약정 요구의 금지에 대한 예외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용의 일정 부분만 지원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개인 또는 가족이 부담하는 것과 같은 수당이 이에 포함됩니다.

리저널센터 소셜 레크리에이션 POS 정책

W&I법 4688.22(a)(5)절은 "리저널센터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지출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정책, 절차 또는 서면 지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리저널센터 사무장

2024년 2월 06일

3페이지

부서는 소셜 레크리에이션, 캠핑 및 비의료적 치료에 대한 POS 정책의 예비 검토를 포함하여 리저널센터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서의 검토에는 리저널센터에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리저널센터의 이사회 사전 승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는 2023년 7월 1일 이후 본 지침 또는 W&I법 4688.22절과 일치하지 않는 POS 정책을 사용하여 소셜 레크리에이션, 캠핑 및 비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및 그 가족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리저널센터는 본 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고객의 소셜 레크리에이션, 캠핑 및 비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고객 및/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참가자 중심 서비스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의 가용성 향상

W&I법 4688.22(a)(4)절에는 "리저널센터가 고객 및 그 가족에게 소셜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및 캠핑 서비스에 대한 기존 기회를 소개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및 자금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의 가용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 체결을 가속화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의 가용성을 높이고, 소셜 레크리에이션 및 캠핑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리저널센터는 다음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 1) 부서의 2023년 11월 3일 지침에 설명된 대로 참가자 중심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저널센터는 W&I법 4688.22(a)(4)절의 의미 내에서 기존 소셜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및 캠핑 서비스 기회에 대한 자금을 공급업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16일 부서에서 발표한 지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은 지역 기업 또는 커뮤니티 리소스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초에 구독료 또는 액세스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재정 관리 서비스는 서비스 액세스 지원을 위해 월초에 해당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결제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 사무장

2024년 2월 06일

4페이지

- 2) 소셜 레크리에이션 및 캠핑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리저널센터는 부서의 소셜 레크리에이션 보조금 수혜자를 비롯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서는 2023년 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강화 보조금(소셜 레크리에이션 보조금)을 지급해 서비스 범위를 다각화하고, 리저널센터의 서비스를 받는 개인을 위해 소셜 레크리에이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3) 소셜 레크리에이션 및 캠핑 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할 때, 리저널센터는 2023년 11월 3일 서신(붙임 자료 A-E)에 명시된 '복원된 서비스에 대한 표준 제공업체 계약 체결 패킷(Standardized Vendorization Packet for Restored Services)'에 제공된 문서만 요구해야 합니다. 복원된 서비스에 대한 표준 제공업체 계약 체결 패킷 사용과 다른 경우 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요율

Boys and Girls Clubs, 댄스 스튜디오 등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소셜 레크리에이션, 캠핑 및 비의료적 치료의 경우 리저널센터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U&C) 요율에 따라 환급할 수 있습니다. CCR, 제17조 57210(a)(19)절에 따라 U&C 요율은 리저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또는 가족이 이용하고, 서비스 수혜자의 최소 30%가 리저널센터의 서비스 대상 개인 또는 가족이 아닌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일반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요율을 의미합니다. U&C 요율은 부서나 보건부에서 정한 요율이 없는 경우 사용됩니다. U&C 요율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리저널센터는 [2022년 2월 8일](#) 서신에 제공된 지침을 준수하고 복원된 서비스에 "SRA" 하위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공업체 계약 체결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서 웹사이트의 [Frequently Asked Questions\(자주 하는 질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본 지침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주요 리저널센터 담당자 또는 지역 사무소(916-654-1690/oco@dds.ca.gov)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본 서명자:

ERNIE CRUZ

부사무차장(Deputy Director)

사회봉사과(Community Services Division)

cc: 다음 페이지 참조.

리저널센터 사무장

2024년 2월 06일

5페이지

cc: 리저널센터 관리자(Regional Center Administrators)
 리저널센터 고객 서비스 디렉터(Regional Center Directors of Consumer Services)
 리저널센터 커뮤니티 서비스 디렉터(Regional Center Community Services Directors)
 리저널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연합(Association of Regional Center Agencies)
 Nancy Bargmann, 발달장애서비스부
 Brian Winfield, 발달장애서비스부
 Carla Castañeda, 발달장애서비스부
 Pete Cervinka 발달장애서비스부
 Jim Knight, 발달장애서비스부